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전자주주총회 법무부 가이드라인 발표: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 점검이 필요한 주요 쟁점

2026.11.25

1. 들어가며

법무부가 2026. 11. 25. 오전 「2026 선진법제포럼」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 7. 22. 상법 개정을 통해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가 신설되어 2027. 1. 1.부터 상장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특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및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요건, 소집통지, 관리기관 등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출석 신청방법, 주주의 질의·발언 제한기준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시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고시는 아직 제정 전이므로,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들을 대상으로 원활하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운영하기 위해 유의 및 참조할 사항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가이드라인을 작성 및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본 가이드라인은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법의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의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서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고, 따라서 법무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 청구 또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특정 소송에서 당연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상법 제379조의 재량기각 여부 및 이사의 주의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과 함께 ▲ 의무개최 대상회사인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운영규정의 마련, ▲ 매체 선정, ▲ 사전신청과 출석 방법의 변경, ▲ 주주의 질의·발언 제한, ▲ 통신장애 시 총회의 연기·속행, ▲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보존 등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던 쟁점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짚어 드리고자 합니다.

2.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의 실질적 형평성 유지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 사이의 실질적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상법상 전자주주총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가 단일한 주주총회를 구성하는 '현장병행형(Hybrid)'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가급적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사이에 완전히 동일한 취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형평을 기하고, 만일 전자주주총회의 기술적 특성상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되, ▲ 그 기준을 미리 정하여, ▲ 주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주가 공개된 기준을 보고 현장출석 또는 전자출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주요 쟁점별 법무부 가이드라인의 내용

가. 의무개최 대상 판단과 이사회 결의·운영규정 (상법 제542조의14,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3)

의무개최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총액 2조 원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산총액이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이 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 자체에는 개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그 승인 이후의 총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한다는 뜻을 결의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하며, 의무개최 대상회사도 이러한 결의 없이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구체적인 운영방식까지 총회마다 결의할 필요는 없고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중요한 일반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거친 운영규정으로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규정은 전자주주총회만을 위한 별도 규정을 두기보다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에 함께 적용되는 주주총회 운영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전자통신수단의 매체 선정 (상법 시행령 제42조의4)

상법 시행령은 전자통신수단이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정할 뿐 특정한 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의사가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 매체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전자출석 주주에게 보내는 중계의 경우 영상·음성·자료화면의 동시 송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자출석 주주가 회사에 보내는 질의·발언의 경우 문자입력을 기본으로 하되, 회사는 선택에 따라 음성 채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령에는 "즉시 전달"과 관련하여 지연이 허용되는 시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경미한 지연만으로는 즉시성 요건을 결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서버 부하 등으로 인한 상당한 지연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가 목표 지연 시간을 정하여 실제 지연을 측정·기록해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 전자출석 사전신청과 출석 방법의 변경 (상법 제542조의14 제3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1항, 제42조의5 제2호)

회사는 주주총회일 전날까지 전자출석을 신청한 주주에게만 전자출석을 허용하는 사전신청제를 운영할 수 있으나,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사전신청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절차일 뿐 주주의 전자출석을 임의로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신청 마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전날'을 달력일로 보므로, 회사는 전날이 휴일이더라도 신청 마감일을 직전 영업

일로 앞당길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전날의 특정 시각(예컨대 오후 5시)을 마감시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뉴스레터에서 짚어 드린 해석상 쟁점에 관하여도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사전신청 인원 제한에 관하여는, 선착순 정원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사는 적법하게 신청한 주주가 모두 출석할 수 있는 시스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② 출석 방법의 변경에 관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가급적 주주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사전신청을 한 주주가 현장에 출석하면 회사는 현장출석을 인정하되 사전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③ 사전 서면투표·전자투표를 한 주주의 경우, 전자주주총회 사전신청만으로 사전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전자주주총회 사전신청이나 본인확인 시점에 사전 의결권 행사의 철회에 관한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 주주의 질의·발언 제한 (상법 시행령 제42조의7 제2항, 제42조의5 제5호)

주주의 질의·발언은 현장주주총회에서도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부산고등법원 2000. 9. 29. 선고 2000나4722 판결),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상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질의·발언 제한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수정의안 제출처럼 안건 의결과 직접 관련된 권리는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미리 정하여 소집통지에 포함하여야 하고, 단순히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만으로는 “구체적 기준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미리 정해 둘 사항으로는 ① 1인당 또는 안건당 질의·발언 횟수, ② 1회 또는 총 발언시간, ③ 문자 질의의 분량과 마감 시한, ④ 제한되는 질의의 처리기준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은 제한 기준을 원칙적으로 주식 수와 관계없이 주주별로 균등하게 적용하고, 현장출석 주주와 전자출석 주주 중 어느 한쪽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운영시간과 채널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의제와 무관하거나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질의는 다루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에 불리한 질의’처럼 내용을 기준으로 질의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발언 시간을 2분으로 할지 3분으로 할지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주들은 다른 상장회사의 기준과 비교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 통신장애 시 총회의 연기·속행 (상법 제372조 제1항)

일반 주주총회는 보통결의로 연기·속행할 수 있지만(상법 제372조 제1항), 전자주주총회에서 통신장애로 전자출석 주주의 상당수가 참가하지 못하면 그 보통결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그 대응 방법으로 ① 개회 선언 직후 “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적 총회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의장에게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받아 두는 방식과, ②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통신장애 등의 경우 의장의 연기·속행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소집통지로 사전 안내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②의 경우 운영규정 자체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더라도, 연기·속행은 원래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그 조항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 방식에 의하든 의장은 연기·속행 여부를 판단하되,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는 전자출석 주주에게 연기·속행 사실을 알릴 비상 통지수단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서버·회선 이중화 등으로 장애에 대비하고, 소집통지와 로그인 화면으로 장애 가능성과 처리 방침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회사가 이러한 대응을 충실히 하였다면 통신장애로 전자출석 주주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결의취소에 이르는 하자가 아니거나 재량기각(상법 제379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 개인정보·초상권 보호와 기록 보존 (상법 제542조의15 제4항·제5항, 상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3호, 제42조의9)

상법 시행령은 회사와 관리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을 갖출 것만 정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회사와 관리기관의 관계를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관계로 보므로, 회사로서는 위탁 업무의 범위와 보호조치를 문서로 정하고 관리기관의 처리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한편 초상권과 관련하여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중계를 의장, 현장 분위기, 의사진행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질의·발언하는 주주의 모습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노출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또한 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법령상 5년간 보존하고 3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주주총회에서 주주에게 교부한 소집통지서, 소집공고문, 의결권 행사 참고자료 등 주주총회 관련 서류에 한정됩니다(상법 시행령 제42조의9). 따라서 출석 로그, 질의·표결 처리 내역, 녹화영상 등 그 밖의 운영 기록은 회사가 보관 여부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2026. 11. 25. 발표된 법무부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수치나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회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할 때 따라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무개최 대상회사의 첫 전자주주총회가 될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로서는 ▲ 운영규정에 질의·발언 제한 기준, 사전신청 마감 시각, 통신장애 시 연기·속행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 이를 소집통지와 신청 화면으로 주주에게 명확히 알리며, ▲ 관리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리허설을 통해 관리기관의 시스템 용량과 장애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는 운영규정 정비, 소집통지 양식 개편, 관리기관 위탁계약 검토, 총회 당일 진행 자문 등 전자주주총회 준비 전반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기업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이동건
대표변호사

02-316-4297
tglee@shinkim.com

이숙미
변호사

02-316-4016
smlee@shinkim.com

오새론
변호사

02-316-1658
sroh@shinkim.com

최명
변호사

02-316-1798
mchoi@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